

# 2020 『세법노트북(1쇄)』 추록 및 정오표(3월 2일)

2020 『세법노트북』(1쇄)의 추록 및 정오표를 올립니다. 세법 시행령이 당초 안과 비교하여 일부 수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고, 일부 오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. 다만, 일부 의미가 바뀌지 않는 단순한 자구수정사항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

## 세법 노트북-부가가치세법 1쇄

신설안 → 신설, 개정안 → 개정

페이지	수정전	수정후
p13	정리 *2) 사업장과~본다. <b>신설안</b>	*2)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소가 변경되면 사업장의 주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等的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. <b>신설</b>
p36	*2) 대금결제요건	*2) 대금결제 요건(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). 단,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하고 (가) 또는 (나)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. (가)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(나)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(다)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(라)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<b>신설</b> (마) 그 대가를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<b>신설</b> (바)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로 예치하는 방법(외화 입금사실이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) <b>신설</b>
	*3) 다음 중 어느 하나에 ~	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역. 다만, (가) 중 전문서비스업과 (사) 및 (예)는 상호주의 적용 <b>개정</b>
p61	정리 1 대손사유 ~ ③ 중소기업의 외상~외상매출금 ⑤ 재판상 화해~에 따른 조정에 갈 ⑦ ~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~	대손사유 ...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①,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②(⑥, ⑦은 제외) ③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~ ⑤ 재판상 화해~「민사조정법」에 따른 조정과 조정에 갈음하는~ <b>개정</b> ⑦ ~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~
p90	(5)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표 합병 내용 수정	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합병을 할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합병 이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. <b>신설</b>
p94	2) 재화의~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표 납부유예 요건 내용 수정 (나) 최근 2년간 국제(관세 포함)~	(나) 최근 2년간 국제(관세 포함)를 체납(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)한 사실이 없을 것 <b>개정</b>
p110	간이과세 배제사업 경영 및 폐지 내용 수정	①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배제사업을 신규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② ①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해당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,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배제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 <b>신설</b>

# 세법 노트북-법인세법 1쇄

신설안 → 신설, 개정안 → 개정

페이지	수정전	수정후									
p12	무조건 기타사외유출 ⑧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~	⑧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정상가격·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(국조법 제4조, 제4조의2 및 제6조의2)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않은 소득 <b>개정</b>									
p56	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 박스 ⑧ 내용 수정	⑧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<b>신설</b> (법칙)									
p60	(12) 리스료 내용 추가 리스이용자가~따름	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(리스개설직접원가 제외)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(다만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금융리스 외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함) <b>개정</b> (법칙)									
p88	내용연수특례 내용 ~기준내용연수의 50%를 더하~	자산별·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50%(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75%)를 더하거나 뺀 범위(1년 미만 버림)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.									
p98	(2) 대손요건·대손시기 및 대손금액 표 수정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신고조정사항</th> <th>결산조정사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대손요건</td> <td></td> <td>③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(단,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) <b>신설</b> ⑤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른 화해와 화해권고결정 및 「민사조정법」에 따른 조정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<b>개정</b> (법칙)</td> </tr> <tr> <td>대손시기</td> <td>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</td> <td>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신고조정사항	결산조정사항	대손요건		③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(단,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) <b>신설</b> ⑤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른 화해와 화해권고결정 및 「민사조정법」에 따른 조정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<b>개정</b> (법칙)	대손시기	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	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
		구분	신고조정사항	결산조정사항							
대손요건		③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(단,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) <b>신설</b> ⑤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른 화해와 화해권고결정 및 「민사조정법」에 따른 조정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<b>개정</b> (법칙)									
대손시기	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	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body> <tr> <td>(1) 보조금 수령</td> <td>(차) 현 금 100 (대) 보조금 100 (자산차감)</td> <td>(차) 현 금 100 (대) 부 채 100 (이연수익)</td> </tr> <tr> <td>(2) 자산취득</td> <td>(차) 자 산 100 (대) 현 금 100</td> <td>(차) 자 산 100 (대) 현 금 1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(1) 보조금 수령	(차) 현 금 100 (대) 보조금 100 (자산차감)	(차) 현 금 100 (대) 부 채 100 (이연수익)	(2) 자산취득	(차) 자 산 100 (대) 현 금 100	(차) 자 산 100 (대) 현 금 100					
(1) 보조금 수령	(차) 현 금 100 (대) 보조금 100 (자산차감)	(차) 현 금 100 (대) 부 채 100 (이연수익)									
(2) 자산취득	(차) 자 산 100 (대) 현 금 100	(차) 자 산 100 (대) 현 금 100									
p105	사례 1 (1), (2) 수정										
p126	세액공제액 내용 수정	① 재해 ~(가산세 <sup>*1</sup> ) ~ ② 재해 ~(산출세액 <sup>*2</sup> ) -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감면세액+가산세 <sup>*1</sup> ) *1) 가산세 : ~ *2) 산출세액 :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·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법인세액 포함									
p130	V.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 표 내용 추가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과세표준과 세율</th> <th>~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분납</td> <td>① 법인세를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법인세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(농특법 9 ①). ② 법인세가 분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분납기간 이내에 다음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. (가) 농어촌특별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: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(나) 농어촌특별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: 그 세액의 50% 이하의 금액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과세표준과 세율	~	분납	① 법인세를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법인세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(농특법 9 ①). ② 법인세가 분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분납기간 이내에 다음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. (가) 농어촌특별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: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(나) 농어촌특별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: 그 세액의 50% 이하의 금액					
과세표준과 세율	~										
분납	① 법인세를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법인세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(농특법 9 ①). ② 법인세가 분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분납기간 이내에 다음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. (가) 농어촌특별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: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(나) 농어촌특별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: 그 세액의 50% 이하의 금액										
p130	<세부내용> 연구·인력 개발을 위한 감면 내용 추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(조특법 10)</li> <li>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 법령으로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(조특법 25조 1호) <b>개정</b></li> <li>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(조특법 13조)</li> </ul>									

페이지	수정전	수정후
p146	1. 원천징수대상 내국법인에 다음의~	내국법인(금융회사등 제외)에 다음의~
p151	(나) 상법에 ~이익준비금(이익배당액 의 1/10을 말함)	(나) 상법에 ~이익준비금(현금배당액의 1/10을 말함)
	(아) 연구·인력개발준비금의 ~ (카) 「공적자금관리 특별법」에 따른~	(아) 삭제 종전 : (자) → (아), (차) → (카)
p160	4. 대손금 (결산조정사항) 수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</li> <li>•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(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)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padding-left: 10px; margin-left: 20px;">해당 규정 없음</div>

# 세법 노트북-소득세법 1쇄

신설안 → 신설, 개정안 → 개정

페이지	수정전	수정후				
p17	IV.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표 추가	<table border="1"> <tr> <td>⑥ 법원보증금 및 경락대금의 이자(비실명의 경우 포함)</td> <td>14%</td> </tr> <tr> <td>⑦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에서 발생하는 이자·배당소득 중 비과세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</td> <td>9%</td> </tr> </table>	⑥ 법원보증금 및 경락대금의 이자(비실명의 경우 포함)	14%	⑦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에서 발생하는 이자·배당소득 중 비과세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	9%
⑥ 법원보증금 및 경락대금의 이자(비실명의 경우 포함)	14%					
⑦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에서 발생하는 이자·배당소득 중 비과세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	9%					
p26	<p>📌 복식~</p> <p>* 토지~다만, 건설기계는 ~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.</p>	* 토지~말한다. 다만, 건설기계는 2018.1.1.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. <b>개정</b>				
p28	<p>II. 비과세 사업소득</p> <p>박스 (7) 내용 수정</p> <p>*1) 박스</p> <p>② 공동~</p> <p>④ 본인과 배우~</p>	<p>(7)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: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(☞ 연 5천만원 초과시 5천만원까지 비과세) <b>신설</b></p> <p>② 공동소유주택 :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(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함). 다만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. <b>개정</b></p> <p>(가) 공동소유주택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체 수입금액(해당 공동소유자가 지분을 소유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함)에 해당 공동소유자가 소유한 해당 주택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</p> <p>(나) 과세기간의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30% 초과 보유하는 사람</p> <p>④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: 주택 수를 합산. 다만, ②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 하나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중 1명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아 합산한다. ☞ 배우자 외의 가족의 소유주택은 주택 수 계산시 제외 <b>개정</b></p> <p>(가) 본인과 배우자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</p> <p>(나)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같은 경우로서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해 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</p>				
p46	※ 사업자의 기부금~있다. 이 경우 <u>이월된</u>	※ 사업자의 기부금 ~있다. 이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이월된 기부금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(먼저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부터 차례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). → 2013.1.1.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됨 <b>개정</b>				
p50	⑩ 그 밖에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	③ <u>주택자금~</u> 이익. 다만,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(부수토지 포함)의 구입·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어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제외한다. <b>개정</b>				
p100	⑪ 부가가치세 과세~지방자치단체조합(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제외)에 ~	⑪ 부가가치세 과세 ~ 지방자치단체조합(의료기관, 보건소 및 도서·신문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 사용분으로 인정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)에 ~ <b>개정</b>				
p106	등록임대주택	③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(이하 '임대료등')의 증가율이 5%를 초과하지 않을 것.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,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. <b>개정</b>				
108	연금계좌 세액공제액	*4)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<b>개정</b>				
p135	정리 3	대주주 : 주식~종료일(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) 현재 그와 ~ 해당하는 자 <b>개정</b>				
p140	다만, 신규 주택의~의해 확인되는 경우~인정하지 아니한다.	다만,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,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,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. <b>개정</b>				